

거점형 마을활력소 10대 운영원칙(안)

민관협력원칙

시설의 소유권, 관리·운영 책임과 민간위탁

- 원칙1
-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소유권과 시설 운영·관리의 총괄책임은 자치구에 있으며, 원활한 마을공동체 및 마을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를 운영·관리의 민간위탁 주체로 선정한다.

운영주체(마을자치센터)와 지원주체(자치구) 협력

- 원칙2
-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운영주체인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와 지원주체인 자치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에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서울시의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

- 원칙3
-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치구 단위의 마을공동체 공간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위해 직접지원으로서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조성 비용을 최대 500-900㎡(2,992천원/㎡)에 대해 지원하고, 인건비(신규 2인 인건비 50%)를 개소년도 기준 2년간 지원한다.
 - 서울시의 직접지원은 본 10대원칙의 준용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이 미비할 시 철회 또는 지급이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다.
 -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공감워크숍 등의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.

민관협력 운영위원회 및 『거점형 마을활력소 기본계획』 등

- 원칙 4
-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조성 취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·관(자치구,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와 모법인, 서울시(또는 서울시 마을센터), 마을자치 전문가 등)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 - 운영위원회는 매년 『거점형 마을활력소 기본계획』을 논의 및 결정하고 규약/조례 등의 형태로 각 주체별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하며, 그 밖의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주요 의제를 상정, 논의할 수 있다.
 -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되 각 자치구별로 거점형 활력소의 운영의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, 조성 초기에는 월별, 이후에는 분기별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 - 매년 연말에 당해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.
 - 운영위원회는 자립적 운영을 위해 부대시설 및 상업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을 결정할 수 있으며, 매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익의 발생과 사용의 적절성을 논의한다.

마을공동체·자치 외 타분야 입주 단체

- 원칙 5
-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조성 취지와 원활한 운영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및 자치 분야 외의 타 분야 시설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되,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마을활력소 관련 공간을 500㎡ 이상은 확보하며, 전체 시설의 명칭이 마을활력소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.
 - 타 분야 시설과 관련된 자치구 주무부서와 입주단체(자치구 지역에 기반한 비영리 공익단체,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 등)는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위원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.
 - 또는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입주 단체들간의 입주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와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다.

거점형 마을활력소 10대 운영원칙(안)

공간운영원칙

- 원칙 6 **세부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**
- 운영주체는 거점형 마을활력소 공간운명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.

- 원칙 7 **기본 운영시간**
-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기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.
 - 평일 오전 9시 - 저녁 10시 / 토요일 오전 9시 - 저녁 6시 (일요일, 법정 공휴일 휴무)
 - 거점형 마을활력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모든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운영시간은 동일하게 하되,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- 원칙 8 **인력 배치 및 운영**
- 거점형 마을활력소 개소 전, 운영주체와 지원주체는 공감워크숍을 통해 공간 규모, 세부 프로그램,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사전계획을 수립한다.
 - 서울시는 신규 2인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중 50%를 개소년도 기점으로 2년간 편성한다.
 - 해당 자치구는 신규 2인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중 나머지 50%를 개소년도 기점으로 2년간 편성하며 이후에는 100% 지원한다.
 - 거점형 마을활력소 개소 후, 실제 운영과정에서 운영주체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지원주체는 예산 편성 및 지원에 협력한다.
 - 운영주체는 상황에 맞게 교대근무, 순환근무 등의 형태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.

- 원칙 9 **자립적 운영**
-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자립적 운영을 위해 부대시설 및 상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,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은 운영주체와 지원주체가 논의하되,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공간구성 기본사항을 해쳐서는 아니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 - 발생한 수익은 거점형 마을활력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마을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매년 운영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익의 발생과 사용의 적절성을 논의한다.

- 원칙 10 **시설 관리(전기, 화재, 안전, 주차 등)**
- 거점형 마을활력소 시설 관리의 총괄 책임은 자치구에 있으며, 수탁자인 마을자치센터가 원활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주체인 자치구는 전문인력 인건비 예산 편성 등의 지원을 한다.
 -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서울시 조성지원 면적 기준 최대치인 900㎡를 초과하는 마을활력소의 경우, 자치구가 마을활력소의 시설관리 기술직을 배치하거나 시설관리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한다.
 - 지원주체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매년 시설유지보수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